

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4일
신청인	법인 또는 기관명			
	대표자(성명)		생년월일(성별)	
	주소		전화번호	
점용·사용허가번호(협의·승인 연월일)				
점용·사용 장소				
점용·사용 면적 m²				
점용·사용 목적				
신청 사유				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
(공유수면관리청) 귀하				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(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) 2.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	수수료 없음
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	

유의사항

- ※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, 시설물, 흙·돌,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.
- ※ 이 별지에서 "공유수면관리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